



2022-05호

05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3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 5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7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 10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2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15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9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4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찾길 사고 저감 조례
- 26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35 대구광역시의회, '정책발굴' 현장 속으로!
- 37 대전광역시의회,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 39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40 경상남도의회, 제12대 경남도의회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 실시



최근 제·개정 법령

- 45 검찰청법
- 47 형사소송법
- 49 주민투표법
- 5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55 출입국관리법
- 5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58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5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질의
- 69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74 「지방자치법」 관련질의
- 77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질의
- 81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84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관련 질의
- 88 「골재채취법」 관련 질의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 19.] [전라남도조례 제5566호, 2022. 5. 19., 제정]

이 조례는 명예 예술인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명예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문화예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전라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 중에 도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우대) ①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수여 및 관리
2. 예술의 체계화 및 계승·발전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 및 전라남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선정 시 명예 예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4조(신청 자격 요건)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내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만 50세 이상으로 제3조에 따른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5조(지정 신청) 명예 예술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요건 증빙서류(공연전시 실적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부
2. 명예 예술인으로서의 가치관, 예술 활동 성과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예술작품 창작 및 계승·발전 등 사회적 기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각종 문화예술 분야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명함판 사진 및 기타 증명자료

제6조(명예 예술인의 심사·선정) ① 명예 예술인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에서 심사 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지정서 발급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예 예술인의 집 현판을 부착한다.

제8조(지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

2. 부정한 예술 활동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3. 명예 예술인 지정서 및 현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 예술인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을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2. 5. 6.] [경상남도조례 제5221호, 2022. 5. 6., 제정]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시·군 협력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활용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3. <삭제>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1호, 2022. 4. 28., 제정]

이 조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도협력사업”이란 인도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에게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 및 개발협력 사업을 말한다.

1.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2. 보육 및 보건의료협력사업
3.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사업
4. 농수산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원칙) ① 인도협력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인도주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인도협력사업은 정치·사회·군사적 상황과 연계하거나 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성, 공정성, 중립

성, 독립성과 같은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의 인도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 및 북한 상호 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및 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을 인도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 및 북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인도협력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도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2. 인도협력사업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도협력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인도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2.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도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도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

은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인도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협력체계가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도협력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 21.] [경기도조례 제7415호, 2022. 4. 21., 제정]

이 조례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맡길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구조 마련 및 확산
2.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3. 아이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1.] [경기도조례 제7398호, 2022. 4. 21., 제정]

이 조례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지연 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선별검사에서 발달지연으로 의료 치료 및 언어 분야에서 심화평가 및 치료중재 권고를 받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 영유아”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선별검사에서 이른둥이, 저체중출생아, 뇌 질환, 언어장애 등의 영유아 발달검진 후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조기개입”이란 발달지연 아동,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해당 연령에 적합한 신체, 인지, 사회 심리

정서 등에 대한 치료 등 일체의 개입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진단 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
2.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및 제공기관의 연계
4.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사례관리
5.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 전문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발달 관련 조기개입 전문성과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4. 21.] [경기도조례 제7424호, 2022. 4. 21., 제정]

이 조례는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41호, 2022. 4. 19., 제정]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원 · 약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 약

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민관협력의원 · 약국 협의체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 · 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 약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민관협력의원 · 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 · 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 보건소장
2.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의 읍·면장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 나. 해당 지역주민
 -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

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

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
2. 책임 능력과 경력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찾길 사고 저감 조례
-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1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47호, 2022. 5. 18., 제정]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

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 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구청장은 제4

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1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86호, 2022. 5. 13., 제정]

이 조례는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문화 유산인 한옥을 보전·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 건축자재”란 한옥의 주요 구조부 및 구조부재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재료를 의미한다.
3.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이하 “재활용은행”이라 한다)”이란 철거된 한옥 건축자재(이하 “철거자재”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말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운영 중인 종로구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 관련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종로구 한옥 재활용은행으로 본다.

제3조(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 ① 서

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한옥 건축양식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철거자재 관리 및 보급
2. 한옥 건축에 대한 전문가 기술 상담 및 기술 지원
3. 철거자재 반입을 위한 해체 및 운반
4. 철거자재 판매 및 상담
5. 한옥 건축 관련 주민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은행 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종로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활용은행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운영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철거자재의 수거 등) 구청장은 철거자재의 해체 및 운반을 직접 시행하거나 재활용은행으로의 반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철거자재 판매) ① 철거자재의 판매 가격은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철거자재 판매 수입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철거자재의 제공) ① 구청장은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한옥 건축양식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자재를 종로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또는 판매가격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로구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 구조물을 건축 및 보수할 경우 철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은행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재활용은행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철거자재 활용 기준
2. 철거자재의 반입 기준
3. 철거자재 매입 또는 매각 비용 책정
4. 철거자재 무상 제공

5. 그 밖에 한옥 재활용은행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한옥 재활용은행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한옥 건축 관련 민간 전문가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 관련 전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한옥 재활용은행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업무의 처리 등) ① 제8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재활용은행 관리 및 운영
 2. 철거자재 반입을 위한 한옥 해체 및 운반
 3. 한옥건축 및 보수에 대한 상담 · 자문
 4. 한옥 건축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수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위탁 취소 등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찾길 사고 저감 조례

[시행 2022. 5. 1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82호, 2022. 5. 13., 제정]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찾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수로 폐사”란 소형동물이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설치하는 배수로 및 경작지의 물관리를 위한 농수로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사고를 말한다.
3. “동물 찾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

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찾길 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찾길 사고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저감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찾길 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그 밖에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찾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찾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찾길 사

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이를 막기 위한 수로 탈출시설 설치, 동물 찾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6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인공수로에 빠져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찾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시행 2022. 5. 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20호, 2022. 5. 10., 제정]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분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 처분

시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시대상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시대상이 위치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
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서산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
5. 감시단장
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
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

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
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
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지도·점검 참
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
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감시

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
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
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2. 5. 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45호, 2022. 5. 6., 제정]

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27호, 2022. 5. 2., 제정]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이하 “구민교육”이라 한다)이란 구민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모 및 보호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등

5.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교육의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구민교육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구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교육 내용) 구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교육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구민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은 구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대상이 구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참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 산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대구광역시의회, '정책발굴' 현장 속으로!
- 대전광역시의회,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경상남도의회, 제12대 경남도의회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 실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책발굴' 현장 속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장으로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올해 첫 시범운영
소관 출연기관 10개소 방문, 개선건의 사항 청취로 공감 정책 실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책발굴 지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현장의 목소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을 시범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을가동하여 5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 산하 출연기관 10개소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의 정
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개선 의안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은 올해부터 대구시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
인력(정책지원팀)을 활용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책발굴단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원거리 근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운영상
황을 의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대화 문
화 정착 및 공감 정책을 실현하고 나아가 먼저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
동을 구현하고자 계획되었다.

정책발굴단은 현장 방문에 앞서 각종 건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 현장을 찾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현안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기존의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위주의 회의가 아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등 참여 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한 출연기관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정책발굴단 덕분에 평소에 생각했던 고충 사항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창의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발굴단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집된 자료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을 의원 정책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결과물을 보일 계획이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고충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시범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향후 정책발굴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정책지원팀’은 올해부터 도입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다. 대구시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였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 집행부와의 시책 협의,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및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시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업무협약식에는 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박월훈 사무처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전광역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 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김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의회와의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장은 “이번 입법조사처와의 협약을 통해서 자치분권 내실화를 다지고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양 시도의회 상생발전과 상호 교류 협력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양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제주도 의회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균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리증진 정책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 실시

도민의 의견 살피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 추천하여 상품권도 지급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다가오는 7월 개원되는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의정활동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이번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는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홍보 배너 내 QR코드 통하여 참여 가능하다.

도민 인식조사 내용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경제·일자리, 복지 등 의정활동 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등 서술식 2개를 포함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도민들이 바라는 점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민 인식조사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하여 제로페이 경남 사랑상품권(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많은 도민들이 인식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은 “이번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여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주제를 선정하여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아울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제·개정 법령



-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 주민투표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출입국관리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1 제정이유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주민투표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나.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제10조 및 제12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1)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 2) 주민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제16조)

- 1)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제18조의2 및 제28조제6호 신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와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1 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나.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제8조).

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9조).

마.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

바.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사.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2조).

아.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3조).

자.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4조).

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제1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2. 5. 4.] [법률 제18798호, 2022. 2. 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시, 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출국이 제한될 경우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1 제정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함(제7조).

마. “개호“를 “간병“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제10조 및 제15조).

바.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3호, 2022. 4. 26., 제정]

1 개정이유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

사망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2번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해당 사건을 덮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모두가 사건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며 늦장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공군 군사경찰은 해당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점도 밝혀짐.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군사적 사항이 아닌 비군사적 사항이고, 군내 조직인 군검찰단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높은 상황으로 군의 지휘체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서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는 군검찰단과 군사법원에서 수사하고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및 공군 본부 내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함(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0명 이내의 검사 및 검사가 아닌 30명 이내의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6조).

자.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권은 법원이 가지고,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제18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의원·치과의원 등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질의
-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 「지방자치법」 관련질의
-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질의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월 2만원 이하의 통신 요금을 지원」 관련 질의
- 「골재채취법」 관련 질의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질의요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94, 2022. 4. 27., 전라북도 무주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바,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참조)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이하 “아이돌봄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이돌봄제공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비로 보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서는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서비스기관의 인력을 서비스기관에 상근하는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과 가정으로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로 나

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서는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아이돌봄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관리비는 사업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각주: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30, 여성가족부).

그렇다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이돌봄제공기관의 운영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귀 군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1 관련

질의요지

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중 섬강 경계 200미터에서 600미터 이내에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77, 2022. 4. 27., 강원도 원주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가축사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

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의 범위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세부지역의 범위와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정 대상을 주거 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 규정한 취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로 특정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하려면 이러한 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을 개정하여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로 변경 규정함으로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원주시조례안으로 정하려는 지역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활환경의 보호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가축분

노법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주시에서 원주시의 실정 등을 고려한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주시조례안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내의 모든 지역을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원주시에서는 질의 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안으로 국가하천 중 섬강에 대해서만 섬강지역 200미터에서 6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질의 가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원주시조례안으로 정하려는 지역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활환경의 보호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주시에서 원주시의 실정 등을 고려한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섬강지역 200미터에서 600미터 이내 지역 전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원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 가의 경우보다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범위를 좁게 정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는 적다고 할 것이나, 해당 구역의 일부라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 의회규칙, 회의규칙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22-0043, 2022. 4. 28., 충청남도 당진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는 위원회의 명칭, 위원정수, 위원의 임기와 선임, 상임위원회별 소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에 정할 수 있는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운영”의 범위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관계나 의회의 행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 운영”이란 본회의, 임시회 등의 개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직무대리, 회의 개최, 질서유지, 의안의 심의순서, 회의록의 작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6조제3항)”, “징계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제101조)”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질의요지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신서천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92, 2022. 4. 28., 충청남도 서천군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7. 의견제시 21-0111).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4. 6. 의견제시 21-0116).

이 사안의 경우 근거 법률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법에 따른 책임의 주체로 국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제1호)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기업 중 화력 발전업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법 제1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보고·검사의 주체로 환경부장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법의 제정 취지가 지역을 뛰어넘어 광역적 환경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에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환경오염 관리방식들이 법에 따른 인·허가로 통합·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종전의 고비용·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에 있음(각주: 2015. 12. 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법 제정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환경 감시 기구를 설

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오염시설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에는 감시 기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천군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대상자인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은퇴농업인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지급대상자인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은퇴농업인에게 매월 1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의견22-0102, 2022. 4. 12., 경기도 부천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2. 24. 회신 의견 22-0028, 법제처 2021. 5. 18. 회신 의견 21-0151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전라남도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급대상자 중 은퇴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 나머지 지급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금액 지급하되(같은 항 본문), 한 세대 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같은 항 단서).

비록 전라남도조례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 규정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급대상자 별 지급액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라남도조례안 제6조제1항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항 단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대상자 1인당 10만원 또는 15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담보하기 곤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51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 반대하지 않고 조례 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와 지방의회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형식적·기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참조)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전라남도조례안 제6조제1항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의견22-0081, 2022. 5. 11., 경상남도 거창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에게 통신요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러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법」
제1조 및 제22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의견22-0114, 2022. 5. 17., 충청남도 태안군

의견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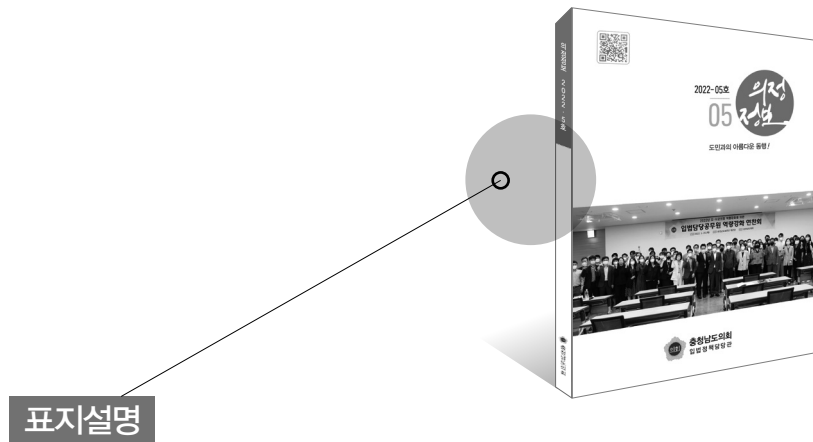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다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골재채취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골재채취의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골재채취를 제한할 수 있

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설명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12대 개원 앞두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등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소통 도모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6일 충청남도보훈관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 공무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입법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6·1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 의회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법제처의 서장원 서기관이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이어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양질의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찬배 사무처장은 “이번 연찬회는 자치입법 입안 및 심사에 있어 입법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입법 역량 증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5호

- 발 행 일 | 2022년 5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